

# 심판위원회 규정

2009년 2월 27일 제 정

제1조 (설치 및 명칭) 위원회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위원회는 본회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심판요원들의 공명정대한 심판활동을 보장 및 장려하며, 독립적인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적용) 본회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심판요원에 적용한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정한 심판상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자문
2. 심판수칙 제·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
3. 심판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4. 심판의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국제심판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
제5조 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본회 임원중에서 위촉하고, 위원은 본회 소속 심판들 중에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 (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하며, 해당 직위의 변경 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승계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 대하여 위·해촉 할 수 있다.

제7조 (운영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
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위원회는 본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5. 위원장 및 위원이 계류 중인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6.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직무 및 권한)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본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될 수 없다.

②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회에 건의할 수 있다.

③ 동일인이 타 종목을 겸직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

제9조 (본회 역할) ① 본회는 심판위원장 및 심판요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.

② 본회는 각종 대회에서의 심판활동 및 심판교육과정, 심판회의 등의 행사참가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.

③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평가과정을 거쳐 심판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본회는 매년 우수심판에 대한 표창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공정 또는 부도덕하거나 심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한 때에는 본회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본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